

##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서(원화)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6. 6. 7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서(구 하나은행)</p>	<p>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서(원화)</p>	<p>약관명 변경</p>
<p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과 xxxxx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 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“가상계좌서비스 이용 계약”을 체결한다.</p> <p>제 2 조(업무내용) 이 계약에 의해 ~~~ 사용용도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가상계좌의 사용용도 &lt;간단히 기재 요망&gt;</p> <p>2. 업무의 범위 가. 계좌개설서비스: (내용생략) 나. 입금 및 통지서비스: “회사”의 ~~~ 모계좌 (이하 “입금 모계좌”라 한다)에 <b>당일중</b> 입금하는 ~~~ 전송하는 업무 다. 조회서비스: (내용생략)</p>	<p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<b>합니다</b>)과 _____(이하 “회사” 이라 <b>합니다</b>)는 다음과 같이 “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(원화)”을 체결<b>합니다</b>.</p> <p><b>제 2 조(정의)</b> “가상계좌”란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는 “회사”가 “회사” 소유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자의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“은행”의 예금계좌와 유사한 체계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합니다.</p> <p>제 3 조(업무내용) 이 계약에 의해 ~~~ 사용용도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<b>같습니다</b>.</p> <p>① 가상계좌의 사용용도(<b>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</b>) _____</p> <p>② 업무의 범위 1. 계좌개설서비스: (좌동) 2. 입금 및 통지서비스: “회사”의 ~~~ 모계좌 (이하 “입금 모계좌”라 한다)에 <b>입금하는</b> ~~~ 전송하는 업무 3. 조회서비스: (좌 동)</p>	<p>사용자 편의성 고려 XXXX 를 밑줄(_)로 변경 및 계약서 명칭 통일</p> <p>- 조 신설 - 가상계좌의 정의 신설</p> <p>조 체하 금감원 권고사항 및 사용자 편의성 고려 문구 수정</p> <p>향후 익일입금 등 전산개발 고려하여 ‘당일중’ 문구 삭제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3 조(업무처리 및 자금정산시간)            ① (내용생략)            ② 자금정산은 평일 기준(휴일포함) 1일2회 실시하며, 정산시간은 &lt;별첨2&gt;의 시간으로 한다. 다만, ~~~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.</p> <p>제 4 조(계좌의 지정)~ 제 10 조(효력 및 계약기간)            (내용생략)</p> <p>제 11 조(계약해지)           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           1. “회사”가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           2. “회사”가 금융관계 법규위반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          3. “은행”과 “회사”는 각각의 경영정책상의 사유, 관련법령의 제·개정, 금융감독기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.            ② (내용생략).            ③ (내용생략)</p> <p>제 12 조(전산운용) ~ 제 14 조(손해배상책임)            (내용생략)</p>	<p>제 4 조(업무처리 및 자금정산)            ① (좌동)            ② 자금정산은 &lt;별첨2&gt;의 “자금정산 방식 및 시간”에 따릅니다. 다만, ~~~ 사전 통보하기로 합니다.</p> <p>제 5 조(계좌의 지정) ~ 제 11 조(효력 및 계약기간)            (좌 동)</p> <p>제 12 조(계약해지)           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1. “회사”가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의 “입금”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2. “회사”가 제 3 조 제 1 항에 기재한 사용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          3. “회사”가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           4. “회사”가 금융관계 법규위반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          5. “은행”과 “회사”는 각각의 경영정책상의 사유, 관련법령의 제·개정, 금융감독기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.            ② (좌 동).            ③ (좌 동)</p> <p>제 13 조(서비스의 중지)            ① “은행”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“회사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,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“회사”에 별도의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1.“회사”가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의 “입금”서비스를 3 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② 제 1 항에 따라 중지된 서비스를 “회사”가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“회사”는 “은행”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“은행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.</p> <p>제 14 조(전산운용) ~ 제 16 조(손해배상책임)            (좌 동)</p>	<p>조 체하            문구변경</p> <p>계약해지 요건추가 및 추가에 따른 호(號) 순서 변경</p> <p>서비스 중지 요건 조항 신설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15 조(신의성실의무)            ① “은행”과 “회사”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6 조(준용사항)            본 ~~~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과 당해 ~~~ 준용하기로 한다.</p> <p>제 17 조(기타) ~ 제 18 조(합의관할)            (내용생략)</p>	<p>제 17 조(의무사항)            ① “은행”과 “회사”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“회사”는 가상계좌가 “회사”의 소유임을 인지하고,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자(이하 “입금자”라 한다.)가 입금자 본인의 소유라고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“회사”는 이용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가상계좌를 신청하여야 하며, 이용하지 않는 가상계좌는 “은행”에 해지신청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 18 조(준용사항)            본 ~~~ 예금거래 기본약관과 당해 ~~~ 준용하기로 합니다.</p> <p>제 19 조(기타) ~ 제 20 조(합의관할)            (좌 동)</p> <p>제 21 조(특약사항) 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height: 40px; width: 100%;"></div></p>	<p>②항 신설            (금감원 지침 반영)</p> <p>문구 삭제</p> <p>조 신설</p>

개정 전			개정 후				비고
<b>&lt;별첨 1&gt;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기준표</b>			<b>&lt;별첨 1&gt;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기준표</b>				수수료 부과기준 내용 명확화  문구 추가
서비스 구분	수수료 이용 구분	수수료	수수료 구분	표준수수료	적용수수료	수수료부과기준	
계좌개설서비스	계좌 신규개설 수수료	100 원	계좌개설서비스 수수료	계좌당 100원	계좌당 ___원	가상계좌 개설 후 최초 입금시 1회 징구	
입금서비스	당행이용->"회사"계좌로 입금 타행이용->"회사"계좌로 입금	건당 300 원 건당 300 원	입금서비스 수수료	건당 300원	건당 ___원	가상계좌로 입금거래 발생시 매회 징구	
최저수수료	매일 중계개설수수료가 10 만원 이하일 경우	10 만원	월최저수수료	10만원 이상	_____만원	매일 계좌개설서비스수 료와 입금서비스 수수료의 합계가 월최저수수료 이하인 경우	
<p>▶ 타행의 창구, CD(ATM)기, 인터넷뱅킹(폰뱅킹, PC뱅킹 포함)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, 무통장 입금, 현금(수표)출금 등의 은행 업무시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각 행에서 정한 별도의 내국환수수료 기준에 따른다.</p>			<p>▶ <u>당행 및</u> 타행의 창구, CD(ATM)기, 인터넷뱅킹(폰뱅킹, PC뱅킹 포함)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, 무통장 입금, 현금(수표)출금 등의 은행 업무시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각 행에서 정한 별도의 내국환수수료 기준에 <b>따릅니다</b>.</p>				

